##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89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김정호·어기구·허종식

정성호 • 전재수 • 윤후덕

박 정ㆍ이연희ㆍ이수진

조인철 • 이훈기 • 최기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있음.

그런데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진압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 그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⑤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하는 경우 그 충전시설은 지상
	에 설치할 수 있다.